

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신청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3항,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2일
한국방재협회장

1. 신청인

법인명	무성토건(주) (대표 김종한)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80111-*****
소재지	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0
법인명	삼부토건(주) (대표 이응근)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0111-*****
소재지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
법인명	디엘건설(주) (대표 곽수윤)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0111-*****
소재지	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(구월동)
법인명	한신공영(주) (대표 선홍규)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10111-*****
소재지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

2. 기술명 :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사석·암반층 시트파일 급속시공법

3. 기술내용(요약)

- 해안·하천 인근지역의 침수해 확산 방지를 위한 물막이 공사 수행 시 특수케이싱의 연결부 가이드와 케이싱보다 직경이 큰 햄머비트를 이용하여 천공한 후 모래채움 공정없이 시트파일을 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미 천공부(굴착되지 않은 부분)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사석 암반층을 포함한 지층에 시트파일을 급속시공할 수 있는 기술

4. 기술범위

- 연결부 가이드 및 토사 배출구가 있고 햄머비트보다 작은 직경의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천공 기술
- 천공시 분쇄된 잔재물이 천공홀 내에 잔류하여 모래채움이 불필요한 기술

5.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(02-6952-93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- 가. 이해관계인 의견서(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)
- 나. 이해관계인 서약서(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)
- 다. 신청서 열람 요청서(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)
- 라. '가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

7. 제출처 :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(044-205-4187)
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(02-6952-9388)

※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

「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」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,

-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.
-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
-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
-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